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16호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 칙 제 1 1 0 3 호 남동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기 획 예 산 과 2

공 고

○ 공 고 제 1 8 8 7 호 2022년도 남동구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공고 청 소 행 정 과 8
○ 보 건 소 공 고 제 9 4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식 품 위 생 과 19
예정 공고

고 시

○ 고 시 제 1 1 7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20
○ 고 시 제 1 1 8 호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 총 무 과 22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규 칙

남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10월 20일

남동구 규칙 제1103호

남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는 공

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 주관부서의 실천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실천계획은 정책목표, 추진계획, 연차별 일정 및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항 확정 후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에 그 내용 및 근거, 사유를 제출하는 등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사전에 주관부서에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공약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대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 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남동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자문
2.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민·사회단체원·대학교수 등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능동적으로 헌신·기여할 수 있는 사람
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⑤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⑦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과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외부평가 협조)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구청장 공약사항 수립 및 이행과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공약이행평가 관련 주민참여 기반 마련으로 공약이행 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도 증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공약사업의 관리체계 및 공약사항확정: 안 제3조~제4조
-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행·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평가결과 환류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2-1887호

2022년 제1회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공고

남동구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 동 구 청 장

2022년 10월 17일

1. 채용예정 인원 : 13명

가. 50세 이상 4명, 50세 미만 9명 채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에 해당

2. 시험방법 및 선발

채용분야	시험단계	제1차	제2차	제3차
환경미화원	서류전형	체력시험	면접시험	

- 가.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체력검정 시험은 세 종목 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체력검정 합격자 선발
 다. 체력검정 실시 중에 발생하는 인명 피해 및 기타 각종 사고는 일체 응시자 책임
 라.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 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마.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 연장자
 - 2순위 : 주민등록상 남동구 장기거주자(연속체류기간)
 - 3순위 : 대형운전면허, 건설기계종사면허(굴삭기) 소지자
 - 4순위 : 체력시험 점수가 높은 자
 - 5순위 : 면접시험 점수가 높은 자
 바. 최종합격자 중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및 고용하지 아니함
 사. “바”항에 의해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순위명부에 의하여 차순위자 고용
 아. 가산점 부여

항목	가 산 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자격 구분에 따라 각 시험별 만점의 5~10%		
저소득층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포함)
	가점	각 시험별 만점의 10%	각 시험별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응시자격

- 가. 시험공고일 현재 1년 전부터(2021.10.17)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공고일 현재 계속 거주하는 자
 나. 응시연령 : 만20세 이상 만59세 이하 ('63. 1. 1 ~ '02. 10. 17. 출생한 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마. 정신질환자 등 사회통념상 환경미화원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자를 제외한 신체건강 하고 도로청소 작업능력이 있는 자
 바. 남동구 환경미화원 근무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사. 근로시간(05:00~09:00, 13:00~17:00)중 남동구 내에서 근무 가능한 자

4. 채용일정 및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접수(1차 서류전형)
 - 일시 : 2022.10.31.(월) ~ 11.2.(수) 09:00 ~ 18:00까지
 - 장소 : 남동구청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6층)
 - 방법 : 서류 지참 본인 또는 대리 방문 접수
(우편 및 FAX 접수불가)
 ※ 응시원서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작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반드시 자필 작성 및 서명]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서약서(체력검정)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 계층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통(원본지참)
(체력검정시험 합격자에 한함)
 •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제출서류 반환 신청이 가능함

나. 체력시험 대상자 공고

- 2022.11.7.(월) 남동구청 홈페이지

다. 2차 체력시험

- 일시 : 2022.11.9.(수) 13:00
 - 장소 : 남동구 어울림체육관(수산동 8-1)
 ※ 장소는 여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라.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 2022.11.11.(금) 남동구청 홈페이지

마. 3차 면접시험

- 일시 : 2022.11.16.(수) 14:00
 - 장소 : 남동구청 4층 개나리홀
 ※ 장소는 여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11.21.(월) 남동구청 홈페이지

사. 합격자 등록

- 일시 : 2022.11.23.(수) 09:00 ~ 18:00
 - 장소 : 남동구청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6층)

5. 응시자 주의사항

-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별도 공고함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실시 30분 전에 시험장소에 도착
 다.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체력시험 실시 중에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기타 각종 사고는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함
 마. 서류전형 합격자, 체력시험 합격자,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통지 아니하며,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바.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6층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453-25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2년 제1회 남동구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도로환경미화원)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2022년 제1회 남동구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도로환경미화원)
성명	(한글)	(한자)	
2022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해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작성요령 》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③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④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필수항목>

지원자 성명	한글		
	영문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요 경력사항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관련 자격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장애 정도	장애인 등록번호
저소득층 여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해당여부		

※ 해당직종에 맞는 특기, 행위, 연구실적, 특허 등 항목을 마련하고 표준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격증·학위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하게 되므로, 기초심사서류 제출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것

☐ 필수

1. 주요 경력사항

근 무 처 (부서)	근무기간	근무월수 (월일수)	직위 (급)	주요업무실적
1. 00 기업 (00팀)	20XX.X.X. ~ 20XX.X.XX.	XX개월	대리	

【작성요령】

-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
 -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일(2022.11.16.)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
- ③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2.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합격년월일
1. 00자격증	XXXXXXX	2009. 3. 28.
2.		
3.		

-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2022.11.16.)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	--

【작성요령】

① 아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4.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장애 정도	장애인 등록번호

【작성요령】

①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저소득층 여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해당여부		

【작성요령】

①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로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2022.11.02.)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체력검정 배점기준 및 측정방법

○ 체력검정 배점기준표

종 목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남자 25Kg	모래 주머니 머리 위로 들기	4분01초 이상	3분51초 ~ 4분	3분41초 ~ 3분50초	3분31초 ~ 3분40초	3분21초 ~ 3분30초	3분11초 ~ 3분20초	3분01초 ~ 3분10초	2분51초 ~ 3분	2분41초 ~ 2분50초	2분40초 이하
여자 20Kg											
윗몸 일으키기(남) (1분 동안)		58회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회 이하
윗몸 일으키기(여) (1분 동안)		55회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이하
턱걸이(남)		20회 이상	19~17	16~14	13~12	11~10	9~8	7~6	5~4	3~2	1회미만
팔굽혀매달리기 (여)		20초 이상	18~19초	16~17초	14~15초	12~13초	10~11초	8~9초	6~7초	4~5초	3초 미만

○ 체력검정 측정 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모래주머니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남자 25kg, 여자 20kg)	- 호명과 동시에 쭈그러 앉는다 - 쭈그러 앉은 상태에서 호각을 붐과 동시에 남자는 25kg, 여자는 20kg의 모래주머니를 들고 일어서서 머리 위로 들어 올린다 - 머리 위로 들어 올림과 동시에 시작 시간을 측정하며 들어 올리고 있는 모래주머니가 머리에 닿거나 머리 아래로 내려올 경우, 발이 지면에서 떨어질 경우 등의 종료 시간을 측정한다
윗몸 일으키기 (남,여)	-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복근력을 이용하여 몸을 일으켜 세우는 동작의 횟수를 측정한다 - 다리는 편안한 각도로 유지하고 두손은 머리 뒤로 깎지껴 잡는다 -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으면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간다 -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 ※ 부정확한 동작은 횟수에서 제외 • 깎지를 푼 상태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을 때 •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는 경우 • 누운 자세로 돌아갈 때 머리 뒤 깎지가 매트에 닿지 않는 경우 등 • 엉덩이를 들었다가 튕기는 소위 배치기 동작
턱 걸 이 (남)	- 철봉에 손등이 응시자 쪽으로 향하게 철봉을 잡는다(의자에 섬) - “시작” 구령과 함께 시험관이 의자를 빼고 시작한다 - 턱은 철봉 위치 이상으로 올라오고 팔을 펼 때 180도로 펴져야 유효 횟수로 인정 ※ 부정확한 동작 : 턱이 철봉 이상 올라오지 않았거나, 내려올 때 팔이 180도 미만으로 펴졌거나, 몸의 반동(배치기)으로 올라오는 경우, 철봉을 잡을 때 손등을 몸 바깥 방향으로 한 경우, 다리가 땅에 닿는 경우 무효 처리
팔굽혀 매달리기 (여)	- 손등을 응시자 쪽으로 향하게 철봉을 잡고 턱을 철봉 윗부분에 위치시킨 상태로 매달려 있는 시간을 측정한다 - 매달리기 준비 시에는 의자 등을 사용한다 ※ 부정확한 동작 : 턱이 철봉 아래로 내려와 매달리는 경우, 철봉을 잡을 때 손등을 몸 바깥 방향으로 한 경우, 턱이 철봉에 닿을 경우 등

개 인 정보 수 집 및 이 용 동 의 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공무직근로자의 공개 채용 시험자료로 활용 ⇨ 공무직근로자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공무직근로자의 공개 채용 시험자료로 활용 ⇨ 공무직근로자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2. . 성명 : (인)	2022. . 성명 : (인)

남동구청장 귀하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금번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2년 12월 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2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로(032-453-2559) 또는 이메일(juhwan0504@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남동구에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5월 2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2년 10월 17일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22-94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2. 11. 1.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10. 17. ~ 2022. 10. 31.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일반음식점	1998-0199495	하여울식당	하**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45번길 20-1 (구월동, 1층일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09-21	2022-11-01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2. 10. 31.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1

2022. 10. 17.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2-11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139번길 9-5 (논현동)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51번길 9 (구월동)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139번길 9-5 (논현동)	2011.3.24.	에코중앙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10.1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에코중앙로139번길 9-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5를 건물번호로 부여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51번길 9 (구월동)	2022.10.1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51번길 11 (구월동)	2022.10.1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37번길 18 (간석동)	2022.10.1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 15-5 (도림동)	2022.10.14.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고 시

남동구 고시 제 2022 - 118호

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 2022. 10. 18.부터 시행
- 통·반 구역 조정 내역 : “첨부문서 참조”

2022. 10. 18.

남동구청장

[첨부]

-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을 위한 -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 계획

- ❖ 간석4동 관내 빌라 및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해 과밀화된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1.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획정기준)

반은 3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통은 2~8개 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의 2(통·반의 개편)

동장은 전출·입 등 변동사항에 따른 통·반의 세대수가 통·반의 획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1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여야 한다.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정 기준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의 통·반 획정 기준 적용
 - 반 : 3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통 : 2~8개 반으로 구성,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정 가능

3. 조정 사유

- 관내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세대수 급증 과대 통 구역조정
- 각 통마다 형평성 있는 세대수 기준으로 배분 추진

4. 조정 내역

- 총괄내역

구 분	조 정 전		증 감		조 정 후	
	통	반	통	반	통	반
남동구	881	3,771	+1	-	882	3,771
간석4동	45	215	+1	-	46	215

- 조정 대상

(2022. 6. 14. 기준)

통별	4통		5통	
총 세대수	383		518	
반별 세대수	1반	235	1반	59
			2반	30
	2반	66	3반	58
			4반	250
	3반	13	5반	35
			6반	43
	4반	69	7반	43

- 500세대 이상의 과밀 통인 5통을 분통하여 1개 통을 신설함과 동시에 인근 과밀 통인 4통에 대해서도 일부 통·반 조정

○ 조정 세부내역

조정 전			조정 후			비고
통	반	세대수	통	반	세대수	
총 세대수		383	총 세대수		317	4통 4개반 ↓ 4통 3개반 (1개반 감소)
4	1	235	4	1	115	
			4	2	120	
4	2	66	5통 1반으로 변경			
4	3	13	4	3	82	
4	4	69				
총 세대수		518	총 세대수		291	5통 7개반 ↓ 5통 5개반 (2개반 감소)
(현) 4통 2반			5	1	66	
5	1	59	5	2	89	
5	2	30				
5	3	58	5	3	58	
5	4	104	46통 2반으로 변경			
		146	46통 3반으로 변경			
5	5	35	5	4	35	
5	6	43	46통 1반으로 변경			
5	7	43	5	5	43	
총 세대수		-	총 세대수		293	46통 신설 (1개통 3개반 신설)
(현) 5통 6반			46	1	43	
(현) 5통 4반			46	2	104	
			46	3	146	

통 · 반구역조정현황

▷ 승인 일자 : 2022. 10. 18.

구분 동명	현행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계	881	3,771	1	0	882	3,771	
구월1동	48	189	0	0	48	189	
구월2동	49	211	0	0	49	211	
구월3동	62	220	0	0	62	220	
구월4동	36	171	0	0	36	171	
간석1동	42	194	0	0	42	194	
간석2동	35	155	0	0	35	155	
간석3동	54	217	0	0	54	217	
간석4동	45	215	1	0	46	215	
만수1동	44	176	0	0	44	176	
만수2동	42	157	0	0	42	157	
만수3동	39	132	0	0	39	132	
만수4동	43	211	0	0	43	211	
만수5동	33	184	0	0	33	184	
만수6동	41	185	0	0	41	185	
장수서창동	32	121	0	0	32	121	
서창2동	53	183	0	0	53	183	
남촌도림동	44	193	0	0	44	193	
논현1동	46	248	0	0	46	248	
논현2동	48	219	0	0	48	219	
논현고잔동	45	190	0	0	45	190	